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 경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7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 경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순선, 최 선, 채유미,
김수규, 장인홍, 전병주,
조상호, 임종국, 이석주,
이성배, 김제리, 김경영
의원 (12명)

1. 제안 이유

-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 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
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
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4조).
- 다. 현장체험학습의 지원계획,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
(안 제5조 ~ 제6조).
- 라.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
실시,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7조 ~ 제8조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진로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현장체험학습”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,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

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 방안
2. 현장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
3. 현장체험학습 중의 학생 안전보호
4.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
5.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자료개발 및 보급)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.

제7조(안전교육)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, 기업,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, 제6조(자료개발 및 보급), 제7조(안전교육), 제8조(협력체계 구축)에 따라 비용 발생

※ 단, 같은 조례안 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, 제6조(자료개발 및 보급), 제7조(안전교육)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([붙임] 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136,500천원(연평균 27,3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7,3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‘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’의 세부사업인 ‘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’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
 - 물가상승률은 미반영
 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136,500천원(연평균 27,300천원)
 - 협력체계 구축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		(2020년)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안계8조 협력체계 구축	27,300	27,300	27,300	27,300	27,300	136,500
	소계(b)	27,300	27,300	27,300	27,300	27,300	136,500
□총 비용(b-a)		27,300	27,300	27,300	27,300	27,300	136,500

○ 협력체계 구축 ≙ 136,5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) $_i$ = 136,500천원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~2024년)

· 2019년 ‘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’ 예산 준용

- 대상 :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등

- 내용 : · 자유학기(학년)제 기본 추진 계획 및 확대 방안 논의, 운영성과 확산 등 중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

· 중학교 자유학기(학년)제 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치구,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

- 소요예산 : 27,300천원

자료 :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 석 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【붙임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19년 예산	사업내용
제5조제2항 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	제1호	학교현장체험학습 버스운영	1,100,000	· <u>현장 현장체험학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, 학교 원격지 체험 장소까지 학생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버스 임차료 지원</u> · <u>중학교 자유학기(학년)제 현장 체험활동 지원</u> · <u>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 연계 및 방과 후 학급 단위 창의체험활동 지원</u>
	제2호	수련프로그램개발운영	40,190	· <u>교육요원의 자기계발과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개발, 및 관리 운영</u> · <u>융합형 수련교육과정 개발</u> · <u>창의, 인성 수련프로그램 개발수련지도사, 전문경력관 자기개발비 및 안전관련 연수비</u> · <u>전국학생교육원합동연구회 활동 관련 경비</u>
	제3호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, 「2019학년도 수련활동·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」 pp.36-42. 참고(첨부자료)		
	제5호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, 「2019학년도 수련활동·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」 첨부자료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원센터(https://gogo.sen.go.kr/index.do)참고		
제6조(자료개발 및 보급)		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, 「2019학년도 수련활동·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」 첨부자료 참고		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19년 예산	사업내용
제7조(안전교육)	안전교육확대	136,780	· 유·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대상으로 학생안전교육 매뉴얼 제작·보급 ·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학생체험교육비 지원 ·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재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

자료: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

□ 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제2항제4호 관련사항

「서울 특수교육 운영계획 2019」 발췌
<p>□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(23p)</p> <p>○ 학교별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 권장 * 「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 158쪽 참조</p> <p>○ 교육지원청별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일일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지원청별 자체 운영계획 수립·운영 -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련활동,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, 현장체험학습,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보조를 위한 <u>일일보조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</u> - 특수교육실무사,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로 사용 불가 <p>□ 장애학생 안전 강화(56p)</p> <p>○ 수련활동,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철저</p> <p>○ 특수학교(급)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계획 수립 시 안전계획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 - 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체 방안 수립: 체육건강과 「2019학년도 수련활동·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」 책자 참조